

서울고등법원 2021. 1. 15 선고 2020나2009716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1. 1. 15 선고 2020나200971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5 선고 2018가합3866 판결

전문

원고(선정당사자),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강대희

변론 종결 2020. 12. 16

판결선 고 2021. 1. 15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5. 선고 2018가합3866 판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이하 '원고'라고 한다) 및 선정자 C영농조합법인(이하 ' 선정자 C ' 이라 한다) 에게 제1심 판결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해 남지원 등 기계 2009. 7.

28. 접수제 17461호로 마친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6행부터 제19행까지『2)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대출기간 만료일부터 진행하는데 제1대출금의 경우 대출기한이 당초 2014. 12. 12.이었던가 2016. 12. 12.로 최종 연장되었 으므로,당심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3) 가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2017. 4. 21.자로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를 마쳤으므로 같은 날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20행의 ”3)”을 ”4)”로 ○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5행부터 제20행까지『선정자 C은 D은행과 사이에 2012 . 12. 7.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제 1대출 금 3억 4, 000만원을 포함시키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을 18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제 1대출금은 채무자인 선정자 C 의 신청에 의하여 그 변 제기한이 당초 ” 2015 . 12.

12.”에서 “2016. 12. 12.”까지로 1년 연장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당심 변론종결일(2020. 12. 16.) 현재 위 변제기한(2016. 12. 12.)으로부터 상사소멸 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하지 않았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한편, 원고는 선정자 C이 변제기한의 연장을 신청한바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측에서 기존대출과정에서 미리받아놓은 선정자 C의 명판과 인감이 날인된 대출기한 연기 신청 및 약정서(을 18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대출 서류'라고 한다)에 임의로 그 내용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작성명의인이 스스로 당해 사문서에 서명·날인·무인하였음을 인정하는 경우, 즉 인영 부분 등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증으로 그러한 추정이 반복되는 등의 다른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 전체에 관한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인 영부 분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문서는 그 전체가 완성되어있는 상태에서 작성명의 인이 그러한 서명·날인·무인을 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며, 그 당시 그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완성된 상태에서 서명·날인만을 먼저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이례에 속한다고 볼 것이므로 완성 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의 추정력을 뒤집으려면 그럴만한 합리적인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간접 반증 등의 증거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1다11406판결).

살피건대, 원고는 선정자 C의 대표이 사로서 이 사건 대출 서류에 그 명판 및 법인인 감을 날인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완성 문서로서의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위대출 서류에 명 판 및 법인인감을 날인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위대출 서류 작성당시에는 내용을 보 충하지 아니하고 이를 공란으로 남겨둔 채 위문서를 피고에게 맡겨 두었는데, 나 중에 피고가 임의로 이를 보충함으로써 위신청서를 위조하였다는 주장인 것인 바, 원고가 위 서류에 날인을 할당시로서는 서류자체가 완성된 상태는 아니었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위대출 서류에 관한 진정성립의 추정을 번 복할 수는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O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21행부터 제6쪽 제6행까지를 삭제한다.

3.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윤승은판사 이예슬판사 송오섭

별지